

2025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25년도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 붙임 : 1.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1부
2. 노사합의서 3부

2025. 8. 18

회사측 위원

대표위원 김 영 섭

위 원 박 효 일

위 원 장 민

위 원 고 충 림

위 원 이 병 무

위 원 오 택 균

위 원 신 영 운

위 원 이 영 관

위 원 장 병 관

간 사 이 중 원

노조측 위원

대표위원 김 인 관

위 원 정 영 미

위 원 유 희 수

위 원 배 준 환

위 원 노 성 국

위 원 전 명 군

위 원 목 현 경

위 원 최 민 주

위 원 김 모 상

간 사 권 중 혁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금협약

- 2025년도 기본급을 3% 인상한다.
- 임금인상은 합의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2025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2. 단체협약

- 단체협약은 불임과 같이 합의한다.

불임 : 2025년도 단체협약 1부

2025.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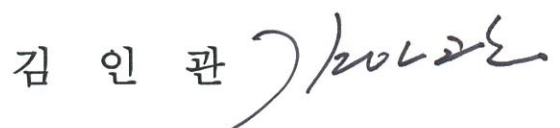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김 영 섭



KT노동조합
위원장

김 인 관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AICT Company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직원 1인당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합의일 현재 재직자
- 지급시기 : 2025년 9월 정기 급여일

2025. 8. 18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재실장

고 충 립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책실장

유 희 수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종사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통한 회사의 경영 성과 견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며 불임과 같이 합의한다.

불임 : 제도 개선사항 1부

2025. 8. 18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재실장

고 충 립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책실장

유 희 수



[붙임]

제도 개선사항

1. 휴대폰 지원제도

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월 16만원^{VAT 포함} 한도 내에서 요금제 및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자사매출 발생분 限} 비용을 지원한다.

※ 개인명의로 단말 할부기간^{24개월 이상 할부 필수} 내 1대만 지원하며,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지급받은 직원은 지급일로부터 2년 후 지원 적용

나. 2026년과 2027년 정년퇴직 예정자(1966년·1967년생)는 정년퇴직 후에도 할부 잔여기간까지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한다.

※ 단, 2026년 1분기 중 개통 및 24개월 할부 필수

다. 시행일은 2026.1.1일자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기계발활동비

가.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자기계발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한다.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나. 자기계발출장일은 폐지한다.

다. 시행일은 2026.1.1일자로 한다.

※ 2024년·2025년 자기계발출장 도래 직원의 잔여 출장일수는 근속도래일로부터 2년간 보장하되, 2026년 이후 최초 사용시에도 활동비는 종전 기준으로 지급

3. 승진 제도

가.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의 승진 누락 방지를 위한 기준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나. 시행일은 2025년 직급승진부터로 한다.

4.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

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인력(Senior Consultant)의 처우를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며,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행일은 2026.1.1일자로 한다.

5. 성과배분제

가. 성과배분 지급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 적용한다.

나. 시행일은 2026년 1차 성과배분부터로 한다.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불임과
같이 합의한다.

불임 :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 1부

2025. 8. 18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재실장

고 충 립



KT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책실장

유 희 수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

1. 조합전임자

가. 조합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이하 “근면자”라 한다)와 무급 조합전임자(이하 “무급전임자”라 한다)로 구분한다.

나. 회사는 조합전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근로시간면제자

가. 회사는 회사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면자를 인정한다.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연간 30,800시간으로 한다.
- 근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으로 한다.

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본 합의를 체결한 날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근면자의 운영

가. 근면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 파트타임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조합은 근면자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면자 변경시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변경 7일 전까지 그 명단을 회사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 파트타임 근면자의 경우, 조합은 사용 3일전까지 사용계획을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무급전임자

가. 회사는 무급전임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 무급전임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나. 조합은 무급전임자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조합은 지정된 무급전임자 명단의 변경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조합전임자의 처우 등

가. 회사는 조합원이 근면자로서 활동하는 기간을 통상근무로 인정한다.

나. 회사는 조합원이 무급전임자로서 조합에 전임되어 있는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및 제수당 등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다. 조합원이 전임에서 해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섭참여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그 노동조합들 간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배분결과를 회사에 통보한다.

6. 유효기간

가.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체결연도의 익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이에 따라 종전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한다.

나.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동관련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변경될 경우 별도 노사 합의한다.

